##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120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이춘석·정준호·김윤덕

서미화 • 이연희 • 윤준병

김성환 • 이원택 • 위성곤

강유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없음.

최근에도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단서 및 제283조제3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다만,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다만,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60條(暴行, 尊屬暴行) ①・②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	③
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u>신설&gt;</u>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
	<u>하지 아니하다.</u>
第283條(脅迫, 尊屬脅迫) ①・②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	③
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u>다만,</u>
<u>신설&gt;</u>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